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3.

발 의 자 : 박 정 · 이훈기 · 김태선
문금주 · 박지원 · 송옥주
윤후덕 · 김병주 · 허성무
김한규 · 김준혁 · 민병덕
최혁진 · 유동수 · 김 윤
황명선 · 박해철 · 이용선
김원이 · 박은정 · 김종민
송재봉 · 이인영 · 김남근
이주희 · 조인철 · 이병진
채현일 의원(2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, 인구절벽,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.

한편 2024년 기준 67개 법정기금은 자산 3,050조 원이고 여유자금은 1,400조 원 규모임. 그러나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음.

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벤처에 의무 투자를 하게 한다면,

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공급되어 청년창업, 고용 확대, 지역균형, 산업 다변화, 수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.

이에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·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81조)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기금관리주체는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벤처투자를 하거나,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,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야 한다.

제81조 중 “금융기관으로”를 “금융기관 및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3조(기금자산운용의 원칙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3조(기금자산운용의 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기금관리주체는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벤처투자를 하거나,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,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야 한다.</u>
② ~ ③ (생략)	③ ~ ④ (현행 제2항 ~ 제3항과 같음)
제81조(여유자금의 통합운용) 기획재정부장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<u>금융기관으로</u>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.	제81조(여유자금의 통합운용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금융기관 및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</u> ----- -----.